

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

「오산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3월 6일

오산시의회의장

오산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전예슬 의원 발의)

1. 제안이유

-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먼지 등 환경 위해 요소를 사업자의 저감 실천과 시의 지도·점검을 통하여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시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골자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제5조).
- 다. 공사장 등 소음측정기 설치 권고를 규정함(안 제6조)

- 라. 특정장비·기계 사용의 제한을 규정함(안 제10조)
- 마. 지도·점검을 규정함(안 제12조)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3년 3월 13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 우편번호 : 447-701
 -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오산시의회)
 - 전 화 : 031)8036-8023, · 팩 스 : 031)375-2875
 - 전자메일 : blue6017@korea.kr

오산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진동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시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소음·진동”이란 「소음·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소음·진동을 말한다.
2. “비산먼지”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3. “특정공사장”이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로서 사전신고 대상인 공사장을 말한다.
4. “특별관리공사장”이란 건축물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의 공사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배출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 운영 여부의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2.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등의 방지활동에 관한 사항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생활소음·진동 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참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 사업공정에 따른 전 처리과정의 관련규정 준수 및 배출소음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
3. 사업에 따른 인근 주민의 소음피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과 협의 등 적극적인 민원해소 대책 마련

②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의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저감 실천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정착에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각종 보호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① 시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상시 측정하게 권고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음측정기기 설치권고 대상은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장으로 한다.

③ 시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 공사장의 사업자에게 대상구역, 설치기간,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 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

기 설치 운영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주민이 요구할 때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소음·진동의 측정) ① 생활소음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진동공정시험 방법에 의한다.

② 시장은 제6조제2항 중 주택밀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소음피해의 사전 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부지경계선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도를 측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 측정결과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처분 등은 규칙 제73조를 준용한다.

제8조(특별관리공사장 비산먼지 억제) ① 특별관리공사장 사업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특별관리공사장 내 차량 통행 진·출입 도로 우선 포장 운영
2. 특별관리공사장 인근 도로의 청결 유지를 위한 청소 실시
3. 건축물 축조 공사장은 건물바닥을 1일 2회 이상 청소와 수시로 사업장 내부와 부지 살수
4. 특별관리공사장 출차 차량의 세륜 세차 이행 여부 확인과 도로에 토사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비산먼지 관리 전담 요원 배치

제9조(도로먼지 억제) ① 특별관리공사장에서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도로굴착 공사를 하는 사업자는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관련된 공사를 가급적 동시에 시행하고 신속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공사 중에는 고압 살수차 등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청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미만 공사장의 사업자는 공사장 주위를 수시로 물청소 하고 토사류가 흩날리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특정장비·기계 사용의 제한) ① 시장은 규칙 제21조에 따라 특정공사 사전 신고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규칙 제21조제1항의 별표 9의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6시 이후에 특정장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인근 주민과 공사장 간의 합의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 시장은 규칙 제21조에 따라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별표 9 기계·장비에 대하여 규칙의 생활소음 규제 기준을 초과할 경우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작업시간의 조정
2. 소음 발생의 분산: 특정장비의 동시 사용 제한
3. 저소음 건설기계의 사용: 규칙 제22조의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

제11조(특정공사 사전신고 제외대상 관리) ① 시장은 법 제22조와 규칙 제21조 규정에서 정한 특정공사 이외의 사업장은 법 제21조 규정에 정한 생활소음 기준 이내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특정공사 이외의 사업장은 공사 중 생활소음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 법 제22조제5항제1호와 같은 법 규칙 제21조제6항 별표10의 공사장 방음시설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장의 생활소음을 기준 이내로 저감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점검) 시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할 수 있다.

1. 공사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에 대하여 저감대책을 이행

하지 않는 행위

2. 아침·저녁 시간대 및 공휴일 특정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소음발생 행위
3.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생활소음
4. 그 밖에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로 인하여 주민의 정신건강과 평온한 주거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제13조(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개선명령 등) ① 시장은 사업자가 제12조의 각 호의 행위로 인해 규칙 별표 8의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소음정도가 규제기준을 준수하도록 방음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소음발생 장비의 사용금지 또는 공사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업자가 제8조 또는 제9조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자의 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관리 자율참여) 시장은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에 대하여 사업자가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협약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관계법령 발췌서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①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 5. 23., 2013. 7. 16., 2019. 1. 15.>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 구역의 면적이 가장 큰 구역(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 사업의 규모를 길이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길이가 가장 긴 구역을 말한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

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2020. 12. 29.>

④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2013. 7. 16., 2019. 1. 15., 2020. 12. 29.>

⑤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2013. 7. 16., 2019. 1. 15., 2020. 12. 29.>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사업이 걸쳐 있는 다른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⑦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조치를 명하지 않으면 해당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 12. 29.>